

##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0. 7. 16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### 5. 회의내용

#### 가. 서면회의 사유

##### 1) 서면결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의거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.

##### 2) 서면보고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의거,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고사항'에 해당됨.

**나. 의결사항**

**1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(주)LG유플러스 - (2010-43(서)-193)**

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LG유플러스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**< 승인 내용 >**

| 상품명           | 상품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요금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U+TV 가족형 (신설) | · TV채널 70개 이상<br>· VOD 2만편 이상 | 월 16,000원 | 기본형(월14,000원, TV채널 60개 이상)과 고급형(월25,000원, TV채널 75개 이상)의 중간가격대 상품 |

**2)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·신고·등록·승인 절차 및 기준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43(서)-194)**

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‘09. 12)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·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개선과제로 채택된 ‘심사비 부담 근거 삭제’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·신고·등록·승인 절차 및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**○ 주요 내용**

- ①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변경등록·신고에 대한 근거 규정에 대한 문구 정리
- ② 허가 또는 승인 심사시에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용 등 심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신청법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조항 삭제

**3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주)에이치씨엔미디어 등 3개사 - (2010-43(서)-195)**

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에이치씨엔미디어 등 3개사의 방송 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등록 및 변경등록하기로 의결함.

**< (주)에이치씨엔미디어 등 2개사 등록 내용 >**

| 신청법인            | 채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송분야<br>(방송유형)  | 대표자 | 최다액출자자<br>(지분율)      | 납입자본금<br>(실질자본금)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(주)에이치씨엔<br>미디어 | 오앤티<br>(O&T)                    | 여행·레저<br>(텔레비전) | 김성일 | (주)에이치씨엔<br>(100.0%) | 25.5억원<br>(55.1억원) |
|                 | 디보 플레이 스쿨<br>(Dibo Play School) | 교육<br>(데이터)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(주)알티캐스트        | 올로<br>(OLO)                     | 교육<br>(데이터)     | 지승림 | 건인투자<br>(28.9%)      | 87.5억원<br>(236억원)  |

**< 한국에이치디방송(주) 변경등록 내용 >**

| 신청법인            | 채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송유형 | 변경사항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에이치디<br>방송(주) | 채널원<br>(Channel ONE,<br>Channel 1) | 텔레비전 | 방송분야 | 정보<br>(방송프로그램<br>가이드) | 버라이어티쇼 및<br>보조적<br>데이터방송 |

**4)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인가에 관한 건 - (주)씨제이 헬로비전의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합병 - (2010-43(서)-196)**

-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3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제이헬로비전의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합병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**< 합병(존속)법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 >**

| 주요사업                | 사업권역             | 주요 주주(10% 이상)   | 경영현황('09년)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종합유선방송사업,<br>기간통신사업 | 수도권, 부산,<br>경북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주)씨제이오쇼핑 46.01%</li> <li>· 자기주식 11.37%</li> <li>· Sable(Asia) Ltd 13.32%</li> <li>· AA Merchant Banking Investments Ltd 10.88%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본금 154억원</li> <li>· 매출액 3,294억원</li> <li>· 영업이익 654억원</li> </ul> |

**< 피합병법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>**

| 주요사업                | 사업권역               | 주요 주주(10% 이상)   | 경영현황('09년)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종합유선방송사업,<br>기간통신사업 | 서울 은평,<br>경기 부천·김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주)씨제이오쇼핑 95.5%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본금 191억원</li> <li>· 매출액 1,037억원</li> <li>· 영업이익 178억원</li> </ul> |

**5)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인가에 관한 건 - (주)씨엠비홀딩스 - (2010-43(서)-197)**

- 「방송법」 제15조의2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3조에 의거, (주)씨엠비홀딩스의 (주)씨엠비전남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최대주주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**< 최다액출자자 · 최대주주 변경 내용 >**

| 대상 사업자명    | 변경 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(주)씨엠비전남방송 | 이인석<br>(주)씨엠비홀딩스 | 50.1%<br>49.9% | (주)씨엠비홀딩스<br>이인석 | 51.0%<br>49.0% |

※ 변경사유 : 지주회사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

**다. 보고사항**

**1)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**

-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시행(10. 9. 23)에 따라 동 법률에 근거한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전부개정안을 보고 받음.
- 주요 내용
  - ① 대통령령 제명을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으로 개정
  - ② 전기통신설비 등의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변경하고, 일부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

| 현 행       | 개 정 안     | 개 정 조 문                 | 변경횟수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전 기 통 신   | 방 송 통 신   | 안 제3조, 제31조             | 4    |
| 전기 통신 설비  | 방송 통신 설비  | 안 제1조외 19개 조문           | 57   |
| 전기통신기자재   | 방송통신기자재   | 안 제1조, 제2조              | 3    |
| 전기 통신 의무  | 방송통신서비스   | 안 제3조, 제10조, 제14조, 제23조 | 8    |
| 전기 통신 신호  | 방송통신콘텐츠   | 안 제3조, 제6조, 제13조        | 4    |
| 전 기 통 신 망 | 방 송 통 신 망 | 안 제3조, 제5조, 제14조        | 10   |
| 전기통신사업자   | 방송통신사업자   | 안 제3조, 제24조             | 2    |